

인터넷 명예훼손 '최대 징역 3년9개월'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전파 가능성 크고 회복 어려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한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범행 동기, 피해자에 미친 피해, 범행 수법, 동종누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징역 8개월~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상대 반론청구 매년 증가세

언론중재위원회는 2018년 조정사건이 총 3,562건 접수돼 전년대비 10.3%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배상청구 1,075건(30.2%), 반론보도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사건의 처리 결과는 조정성립 966건(29.8%), 직권조정 결정 178건(5.5%), 조정불성립결정 554건(17.1%), 기각·각하 89건(2.7%), 취하 1,455건(4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수치다.

언론조정신청 중 10건 중 6건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반면에 신문과 방송 등 전통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각 12.7%, 9.3%로 전년도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론보도 피해자는 대부분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K A A** 유재형, 김다혜 dahye@kaa.or.kr

〈표〉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언론조정신청 현황

(단위 : %)

매체유형	연도	2016	2017	2018	합계	매체유형	연도	2016	2017	2018	합계
신문	일간신문	405 (12.8)	261 (8.1)	306 (8.6)	972 (9.8)	인터넷신문		1,661 (52.4)	1,842 (57.0)	2,141 (60.1)	5,644 (56.7)
	주간신문	168 (5.3)	119 (3.7)	145 (4.1)	432 (4.3)	인터넷뉴스 서비스		330 (10.4)	416 (12.9)	421 (11.8)	1,167 (11.7)
방송		423 (13.3)	361 (11.2)	331 (9.3)	1,115 (1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2 (0.1)	2 (0.0)
잡지		16 (0.5)	23 (0.7)	19 (0.5)	58 (0.6)	기타		2 (0.1)	2 (0.1)	5 (0.1)	9 (0.1)
뉴스통신		165 (5.2)	206 (6.4)	192 (5.4)	563 (5.7)	계		3,170 (100.0)	3,230 (100.0)	3,562 (100.1)	9,962 (100.0)